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93

발의연월일: 2021. 5. 13.

발 의 자 : 김병욱 • 이상헌 • 박완주

이병훈 · 송재호 · 정성호

홍성국 • 박영순 • 김영호

정태호 · 양기대 · 이성만

홍익표ㆍ이수진비ㆍ윤준병

이용선 • 박성준 • 김경만

서영교 의원(19인)

제안이유

국제연합(UN)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1992년 '리우선언', 20 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들이 경제성장·환경보전·사회발전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포용적 사회를 추구하도록 권고하였음.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 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 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각각 격하되었고 지방 추진체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또는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18년)의 법적 근거와 관련 시책을 규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1년마다 점검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 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관련이 되는 법령·조례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제14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함(안 제16조).
- 마.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각각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를 둠(안 제18조 및 제21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며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4 조부터 제26조까지).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거나 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28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홍보를 확대한거나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기후 ·환경 위기 극복과 녹색전환, 건전한 경제 성장 및 포용적 사회를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 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환경・사회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태적·환경적 기반이 구축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며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여 모든 구성원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 능성에 기초를 둔 발전을 말한다.
-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구조를 갖

- 추고, 그에 따른 경제 성장의 산물이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며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 5. "녹색전환"이란 생태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 변혁 및 전환하고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 6. "세대 간 형평성"이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말한다.
- 7.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 8.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 9. "지속가능경영"이란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유리적 책임성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한다.

- 1.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이행하고 지속가능발 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 3.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4.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하여 사회·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 5.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환경 관련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 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 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 도록 적극 유도한다.
- 6. 민간주도의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7.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않아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경제·사회·기술의 진보는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여야 한다.
- 8.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여 사회적 정의·포용성·안전

과 통합을 강화한다.

- 9.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및 강화한다.
- 10.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견인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환경·사회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요하네스버그 추진계획, 2015년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관련된 국제적 합의 또는 규범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포용적 사회 구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 대학적 기반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 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하여 양질의일자리를 증진하면서, 혁신적이고 인간중심적인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환경정의와 사회정의를 실 현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여야 한다.
-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학생·지역공동체·기업 및 근로자 등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회교육 ·직업교육 등을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한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게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발 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 생활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과 그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 제8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 2.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관리에 관한 사항
 - 3.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에 관한 사항
- 5.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 6. 빈곤퇴치, 건강·행복,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 7.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 8.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 2. 지속가능발전의 미래 전망과 목표에 관한 사항
- 3.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환경·사회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5.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 6.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 7.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 8.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

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 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보고서"는 "지방보고서"로 본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가기본전략, 제12조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의점검결과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고서를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

에는 제2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중앙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중앙추진계획 또는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1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한다.

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8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또는 제9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 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⑦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관계 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 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 제1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지속가능발 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1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 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1년마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점검결과와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위원회는 1년마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 상황 점검결과와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 제18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 제19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미래세대 등에서 지속가능발전·녹색전환·기후위기·에너지·인권·평화·제도행정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 1. 지속가능발전 전략
- 2.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 3.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 4. 포용적 사회
- 5. 이해관계자 협력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⑥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

- 전 추진단을 둔다.
- 8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 ⑨ 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8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의 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7.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 8. 제16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9.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10. 제2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1. 제28조에 따른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12. 제29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3.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4. 다른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5.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제21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9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의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7. 제16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8.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9. 제27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제29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1.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 12.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 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23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6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 제24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를 보전·관리하여야 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하며, 황폐화된 토지 및 산림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의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 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 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5조(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외부비용을 내재화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구조로 전환및 변혁하는 녹색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녹색산업의 창출, 기존 산업의 전환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사회 구조의 변화 등을 통하여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녹색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는 등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

- 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 고 환경 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개편·운영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고, 교통·도로·항만·상하수도·녹지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26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 보장, 양질의교육환경 제공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인권 존중과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7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 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 현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 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 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

- 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가 지속가능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8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운영, 자료 제출의 범위·방법, 연구센터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지속가능발전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 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 로 실천하는 지역·기업·기관·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

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 시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한다.
 -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 2. 제10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추진계획의 수립ㆍㆍ변경
 - 3.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 4.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③ 숙의공론화장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임성, 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숙의공론화장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국가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 시 반영하며, 의견서와 반영 등에 관한 결과를 제2 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 제3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 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2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 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제도· 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 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3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 방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 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정책"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 중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을 "녹색기술·녹색산업 등"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를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생활"로 한다. 제49조 제목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생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를 "녹색생활의"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한다.

②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